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명
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 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종료 후 1년이 넘도록 해산・청산하지 않아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는미해산・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.
- 현행 조례에는 '조합장은 조합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제출해야 한다'고 규정되어 있으나
 제출 시기나 보고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구청장의 미해산(청산) 조합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.
- 이에 조합장은 조합해산(청산) 계획을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매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,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여

정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관리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